

평창군수도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조례안

의안 번호	“6
----------	----

제안년월일 : 1998. 12. 15.

제 안 자 : 평창군수

1. 제안이유

- 종전 시도에 두도록 되어있는 수돗물의 안전성 진단위원회를 개정된 수도법 제19조의 2규정에 의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로 명칭변경 및 시군단 위에 설치토록 된바,
- 차제에 우리군에도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를 설치하여 맑은 물 공급은 물론 날로 증대되어가는 각종 수돗물의 오염원으로부터 안전한 식수공급과 감시기능 강화를 통해 대 주민 행정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기능(안제2조)

- 수도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검사결과 공표
-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기술의 자문

나. 구성(안제3조)

-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
-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
- 위원은 수돗물의 수질전문가, 군의회의원, 소비자 및 그 보호단체, 환경 단체, 여성단체, 관계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

다. 위원의 임기와 직무(안제4조)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임하고,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 또는 지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
-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

라. 공무원이 아닌 위원 회의 참석시 수당지급(안제9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수도법 제19조2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 다. 관계부처승인 : 도 맑은물 65460 - 1275('98. 9. 16)
- 라. 입법예고 : 해당없음
- 마.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 바. 기타 : 타시군조례(동해시, 서울특별시) -- 사본

평창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례안

제1조(목적) 수도법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평창군 수돗물의 수질평가를 위한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원수 정수, 수도꼭지 검사등)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기술의 자문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중에서 지명한다.

③위원은 수돗물의 수질전문가, 군의회의원, 소비자 및 그 보호단체, 환경단체, 여성단체, 관계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와 직무)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임명된 위원은 그 보직 기간으로 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①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1년이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위촉 위원중 관계공무원은 관계업무가 변경될 때
 5.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②위원이 임기 만료전에 해촉될 때에는 군수는 후임자를 위촉 또는 임명하여야 한다.

제6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그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련인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회의 및 의사)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은 군수 또는 위원의 1/3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등) ①위원회의 안건 및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1인을 둔다..

②간사와 서기는 군수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평창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한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결과처리) 위원장은 회의 개최결과 상수도 수질관리 향상 방안 등 중요한 자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해시조례 제 호

동해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수도법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동해시 수돗물의 수질 평가를 위한 동해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기술의 자문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중에서 지명한다.

③위원은 수돗물의 수질전문가, 소비자 관계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와 직무)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경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임명된 위원은 그 보직 기간으로 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합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1년이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위촉 위원중 관계공무원은 관련업무가 변경될 때
5.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 위원이 임기만료전에 해촉될 때에는 시장은 후임자를 위촉 또는 임명하여야 한다.

제6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그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련인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시장 또는 위원의 1/3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등) ① 위원회의 안건 및 회의록 작성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시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9조(수당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동해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결과처리) 위원장은 회의개최결과 상수도 수질관리 향상 방안등 중요한 차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전의 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동해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 운영조례(조례 제809호 1991년 6월 5일)는 이를 폐지한다.

양수시 간의 설치를 계획하도록 함
(제5조).

다. 지하수의 고갈 또는 실각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장이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시보에 고시하고 일반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알림하도록 함(제6조).

라. 개방환경 이행보증금 산정기준을 정함(제8조).

[2천만원 초과 금액공사 : 금액공사 100분의 10]

[2천만원 이하 금액공사 : 금액공사 100분의 15로 하여 2배 만족을 초과할 수 없다.]

마. 지하수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지하수의 수위 및 수질을 정기적으로 편측할 수 있는 지하수관측점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10조).

바.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변경, 지하수분쟁의 처리 등에 대하여 시장의 차운에 용하기 위해 관계공무원, 시의회 의원, 지하수 관련 전문가 등의 15인 이내로 지하수관리 차운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을 하수부장으로 하는 등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제12조 내지 제18조).

사.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등 관리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사무 이외는 차지구성장이 이를 수행하도록 무기를 위임함(제19조).

아.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징수 및 차는 지방세법의 징수절차에 의하도록 함(제20조).

서울특별시의회
수도권수질평가위
다.

서울특별시장 약속내용 84-1

② 서울특별시조례제3465호

서울특별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19조와 2의 규모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수돗물수질평가 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수돗물의 정기적인 검사·평가 및 공표

-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 대한 수질관리기술의 자문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產生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 수돗물에 대한 수질전문가

- 서울특별시의회 소관위원회 위원 2인 이상

- 수돗물에 관심이 많은 시민

- 기타 소비자보호단체·환경단체·여성단체 등의 장 등

제4조(위원회 임기)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회는 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회

창기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시장 또는 위원 5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회의안건 배부) 위원회의 회의에 부의한 안건은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로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그 실의사항과 관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 (간사) ① 위원회의 서무등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담당과장이 한다.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위원회 활동에 참가하는 위원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청취에 참가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과 법규안에서 회의참석 수당·여비 및 기타 수진정사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 또는 참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

1. 제정이유

수돗물에 대한 불신해소 및 객관적 평가를 위해 수질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함

설치근거 : 수도법이 개정(87. 8. 28)되어 조례로 정하도록 취임된 (증전에는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던 사항임).

2. 주요골자

가. 기능

- 수돗물의 정기적인 점검·평가 및 공표

- 시장에 대한 수질관리기술의 지원

나. 구성

- 위원수 : 15인 이내(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 위원장, 부위원장 : 위원 중에 서호선

- 위원 : 시장이 위촉

- 수돗물에 대한 수질전문가

- 서울특별시의회 소관위원회 위원 2인 이상

- 수돗물에 관심이 많은 시민

- 기타 소비자보호단체·환경단체·여성단체 등의 장 등

- 임기 : 2년

- 회의개최 : 시장 또는 위원 1/3 이상 요구가 있는 경우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상장을 조례로 이에 공포한다.

1998. 3. 10

서울특별시장 직무대리 강덕기 ①

⑥ 서울특별시조례제3466호